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미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4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김미애·강대식·강명구

강민국・강선영・강승규

고동진 • 곽규택 • 구자근

권성동 • 권영세 • 권영진

김 건 · 김기웅 · 김기현

김대식 · 김도읍 · 김민전

김상욱 · 김상훈 · 김석기

김선교 · 김성원 · 김소희

김승수 · 김예지 · 김용태

김위상 · 김은혜 · 김장겸

김재섭 · 김정재 · 김종양

김태호 · 김형동 · 김희정

나경원 • 박대출 • 박덕흠

박상웅 • 박성민 • 박성훈

박수민 • 박수영 • 박정하

박정훈 • 박준태 • 박충권

박형수 • 배준영 • 배현진

백종헌 • 서명옥 • 서범수

서일준 · 서지영 · 서천호

성일종 · 송석준 · 송언석

신동욱 · 신성범 · 안상훈

안철수 · 엄태영 · 우재준

유상범·유영하·유용원 윤상현·윤영석·윤재옥 윤한홍·이달희·이만희 이상휘·이성권·이종다 이일선·이종배·이종욱 이철규·이현승·인요한 임이자·임종득·장동혁 정동만·정성국·정연욱 정점식·정희용·조경태 조배숙·조승환·조은희 조정훈·조지연·주진우 주호영·진종오·최보윤 최수진·최은석·최형두 의원(108인)

제안이유

의료서비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사안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제때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필수의료 공급 약화 등으로 인해 환자가 제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생명과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함께 환자와 의료인력이 수도권으로 집중되어 지역의료 인프라는 약화되고, 이는 지역의료 역량과 신뢰 저하로 이어져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하는 등 지역의료 위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 완결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언제어디서나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제1조).
- 나. 필수의료를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지역의료를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로 정의함(안 제2조).
-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및 인프라 육성, 진료 협력체계 구축, 연구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마.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수의료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24조).
- 바.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안 제 25조부터 제29조).

참고사항

이 법안은 김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필수의료 육성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건강·생명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육성·지원 하고 지역 간 의료수준의 격차를 줄이며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 게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제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필수의료"란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의료 분야로 그 시급성 과 중대성 등을 고려하여 국가의 정책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지역의료"란 지역 완결적인 의료 제공 추진에 필요한 지역의 인 적·물적 의료자원과 지역 내 진료 협력체계를 말한다.
- 3.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란 보건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지역의료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4. "전공의"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

-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공의를 말한다.
- 5. "수련환경"이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련환경을 말한다.
- 6. "보건의료인"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말한다.
- 7.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 8. "보건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 9. "지역필수의사"란 특정 지역 내에서 일정 기간 이상 필수의료 분 야에 복무하기로 한 의사를 말한다.
- 10. "의료사고"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의료사고를 말한다.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제때 필요한 필수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수의료·지역의료 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 정책에 부응하여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추 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종합계획 등

-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수의료·지역의료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이하 이 조에서 "보건의료발전계획"이라 한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제2항의 각호가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기본 추 진방향
 - 2.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활용 계획
 - 3. 필수의료 · 지역의료 종사자 양성에 관한 사항
 - 4.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등에 관한 사항
 - 5. 필수의료 · 지역의료 종사자의 지역별 수급 및 배치 ·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6. 필수의료 · 지역의료 인프라의 육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7. 필수의료 · 지역의료 연구개발의 진흥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종합계획은 「보건의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필수의료·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제출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계획수립의 협조)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8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의료·지역의료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 다)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 필수의료 · 지역의료 제공체계에 관한 사항
 - 2. 지역별·의료기관 종류별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제공실태에 관한 사항
 - 3.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이직률, 직업 만족도 등 근무여건과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4.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임금 수준 및 지급 실태에 관한 사항
 - 5.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인력 관리에 관한 사항
 - 6. 지역별 필수의료·지역의료 제공 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필수의료 · 지역의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등

- 제9조(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종사자의 양성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역필수의사 지원 등)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의사가 시·도지사가 정하는 지역에서 일정 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1항에 따른 지원 외에 지역필수의사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 시 · 도지사는 지역필수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사망
- 2. 「의료법」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도 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중단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지급된지원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도지사에게반환하여야 한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에 지역필수의사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필수의료·지역의료 인프라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의료기관의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적 자원의 구축 및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 2. 의료기관의 특성화·전문화 및 교육·연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3. 의료기관과 산업계·학계·연구계 간의 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필수의료 ·지역의료 인프라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제12조(지역거점병원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할 지역의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와 협의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에서 포괄적인 진료체계를 갖추고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역거점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출 것
 -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등을 갖출 것
 - 3.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진료권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필수의료 수요 등을 충족할 것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호의 사항 및 전문성·진료의 난이도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지역거점병원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정받거나 재지정받은 지역거점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재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 또는 재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 3. 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⑥ 지역거점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 필수의료 진료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진료협력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 1. 보건의료기관 간 보건의료인의 교류에 관한 사항
 - 2.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 진료정보 교류에 관한 사항
 - 3. 보건의료기관 간 환자 전원 및 이송에 관한 사항
 - 4. 보건의료기관 간 교육・수련・연구 협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관련 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 의료 종사자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구 축을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제15조(필수의료·지역의료 연구개발의 진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의료·지역의료 분야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1. 필수의료·지역의료 연구·교육기관의 육성
 - 2. 필수의료 · 지역의료 연구개발인력 및 정보통신인력의 확충
 - 3. 필수의료 · 지역의료 육성 및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
 - 4. 과학기술혁신 성과의 확산 및 산업화 촉진 등
 - 5. 그 밖에 필수의료·지역의료 연구개발의 진흥을 위하여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필수의료특별회계

- 제16조(설치)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분야와 그 분야를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되는 영역을 집중적·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 수의료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 제17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
- 제1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0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2.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제21조에 따른 차입금
- 4. 그 밖의 수입금

제19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 1. 필수의료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 2. 필수의료 관련 조사 · 연구 및 연구개발 사업
- 3. 제25조에 따른 지역의료발전기금으로의 전출
- 4. 제21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제20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①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세입 예산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이 회계에 전입하여야 한다.
 - 1. 「의료법」 제85조에 따라 발생되는 수수료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0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 「의료급여법」 제37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과태료
 - 3. 「약사법」 제98조에 따른 과태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 · 징수하는 것에 한한다.

- ② 정부는 제19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제1항의 전입금 외에 예산에서 정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
- 제21조(차입금) ① 특별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있다.
 - ② 특별회계는 그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 제22조(세출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제23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 제24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을 넘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장 지역의료발전기금

제25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지역의료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자금

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지역의료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6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기금의 운용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제27조(기금의 관리 · 운용) ① 기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 ③ 기금의 관리·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 1. 지역의료기관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또는 보조
 - 2. 의료취약지 대상 필요한 기반 구축 지원
 - 3.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4. 지역 간 연구개발 역량 격차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 5. 기금의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 6. 그 밖에 기금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제29조(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지역의료발전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보칙

- 제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